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제1319호 2018. 2. 5.(월)

조 례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19
-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 23
-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55

공 고

- 공인의 등록 공고 ----- 57
-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8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1
- 목포시 옥암 저류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79

기 타

- 시정 알림판 ----- 82

회람							
----	--	--	--	--	--	--	--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58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8조제1항제2호의 지원기준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를 “시장은 제8조제2호의 지원 대상자에게”로, “지원할”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장이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의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표의 전입 대학생 지원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중 “전입신고 대학생 - 문화상품권 등 지원(1회 지원)”을 “총 4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각 회차별 1회 지급으로 한함)

1. (1회) 전입신고 시 20만원 지급

2. (2회) 전입신고 이후 1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 10만원 지급
3. (3회) 전입신고 이후 2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 10만원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8.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8. 1. 1 ~ 6. 30까지 전입 하여 이 조례 시행 전 기준에 따라 상품권(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자가 조례 시행일 이후 생활안정자금을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상품권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9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제2호의 지원기준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다가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 면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하였을 때 별표의 지원기 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시장은 제8조제2호의 지원 대상 자에게 ----- ----- ----- -----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 다만, 전 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10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9조-- ----- ----- ----.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 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장 이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별표의 지 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제9조제2 항에 따른 지원은 신청서가 접수되 면 동장의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시 장이 지급한다.

[별 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시책명	적용 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출산장려지원 (제3조관련)	출산 축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1. 첫째아이 50만원 (출생 신고 시 일시 금 지급) 2. 둘째아이 100만원 (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 3. 셋째아이 200만원 (출생 신고 시 100만원, 다음 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 4. 넷째아이 300만원 (출생 신고 시 100만 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 급) 5. 다섯째아이 이상 400만원 (출생신고시 10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 간 지급) ※ 쌍태아는 순위별 로 각각 지급
	영유아 보험가 입 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셋째이상 출생아 단 체보험 가입
전 입	전입 축하	조례 제8조	2명 이상 전입신고 세대

[별 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시책명	적용 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출산장려지원 (제3조관련)	출산 축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1. 첫째아이 50만원(출 생 신고 시 일시금 지 급) 2. 둘째아이 100만원 (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 3. 셋째아이 200만원(출 생 신고 시 100만원, 다 음 해 생일 달에 100만 원 지급) 4. 넷째아이 300만원 (출생 신고 시 100만 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 급) 5. 다섯째아이 이상 400만원 (출생신고시 10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씩 3년간 지급) ※ 쌍태아는 순위별로 각각 지급
	영유아 보험가 입 서비스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셋째이상 출생아 단체 보험 가입
전 입	전입 축하	조례 제8조	2명 이상 전입신고 세대

축하지원 (제 9 조 관련)	기념품 지원	제1항 제1호	- 온누리상품권 등 지원(1회 지원)
	전입 대학생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전입신고 대학생 - 문화상품권 등 지원(1회 지원)

축하지원 (제 9 조 관련)	기념품 지원	제1항 제1호	- 온누리상품권 등 지원(1회 지원)
	전입 대학생 지원	조례 제8조 제2호	총4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 (각 화차별 1회 지급 으로 한함) 1. (1회) 전입신고 시 20만원 지급 2. (2회) 전입신고 이 후 1년간 계속 거 주하였을 때 10만원 지급 3. (3회) 전입신고 이후 2년간 계속 거주 하였을 때 10만원 지급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59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분(증명) 제7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1)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하고, 기준 수수료액 “1건당 800원”를 “1건당 800원 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증명)					
1. ~ 6.	(현행과 같음, 생략)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1건		800원 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8. ~10.	(현행과 같음, 생략)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 11.	(현행과 같음, 생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u> <제3조관련>					[별표 1] <u>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u> <제3조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증명)					(증명)				
1. ~ 6.(현행과 같음,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생략)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원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1건	800원 단,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8 ~ 10 (현행과 같음,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생략)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 11 (현행과 같음,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생략)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3160호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정모니터”는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정모니터단”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민소통위원회”로, “자문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소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정모니터”는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정모니터단”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기능) 목포시 <u>시민소통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u>자문할 수 있다.</u> 1. ~ 4. (생략)	제3조(기능) ① -- <u>시민소통위원회</u> -- -----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u><신 설></u>	제4조(구성) ①목포시 <u>시민소통위원</u>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4조 ~ 제10조 (생 략)

회는 소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 제11조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61호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No. _____

성명:

어르신 목욕 · 이미용권



(직인)

사용기간 : 20 년도 연중

<뒷면>

유의사항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연중
- 사용업소 : 관내 목욕탕, 이 · 미용업소
- 목욕업장 이용 시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욕1매, 커트2매(업소에 따라 추가요금 발생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앞면> 200 년도 No. _____ 어르신 목욕 · 이미용권 敬 老 목 포 시 장 ※앞면에 시장의 확인 직인이 있어야 함.	<앞면> No. _____ 성명: _____ 어르신 목욕 · 이미용권 敬 老 목 포 시 (직인) 사용기간 : 20 년도 연중
<뒷면> 유 의 사 항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매분기 말까지 • 사용업소 : 관내 목욕탕, 이 · 미용업소 •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유 의 사 항 •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연중 • 사용업소 : 관내 목욕탕, 이 · 미용업소 • 목욕업장 이용 시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욕1매, 커트2매(업소에 따라 추가 요금 발생할 수 있음)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62호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 호남로67번길 5(호남동)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9-1(영해동1가)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20번길 25(상동)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로161번길 14(용당동)

제6조제4항 본문 중 “목포시 이랜드노인복지관”을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목포시 노인복지관	목포시 노송길 35 (산정동)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 호남로 67 번길 5 (호남동)
목포시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 233-2 (영해동 1가)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 229 번길 9-1 (영해동 1가)
목포시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 20번길 25 (상동)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 20 번길 25 (상동)
목포시 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동 161번길 14 (용당동)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로 161 번길 14 (용당동)
제6조(위탁운영) ①·②·③(생략)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로부터 채납 받은 목포시 이랜드노인복지관 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②·③(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로부터 채납 받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63호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하며, 지원내용은 해당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구 및 납부) 목포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말일까지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64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꽃피는 유달산 축제”를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 관할 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 1. <u>꽃피는 유달산 축제</u> 2. 목포항구축제 ② ~ ③ (생 략)	제2조 (기능) ① ----- ----- 1. <u>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u> 2. ----- ② ~ ③ (생 략)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65호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의 제명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 다.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친환경디자인”이란 친환경 소재,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6.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7.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 2. 예술성·창의성·기능성·경제성·지속가능성·절제미 추구
- 3.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문화의 조화
- 4. 편리와 안전이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5.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주민참여의 다양성 공유
6.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7. 범죄를 사전에 차단 및 감소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8.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준수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시설물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제9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 시 자문
3.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자문 또는 심의
4. 제2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심의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자문 또는 심의

②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예산관련업무 담당국장, 디자인관련업무 담당국장, 문화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간·건축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2. 공공시설물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및 공공이미지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되, 그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영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라. 공공매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마.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의 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표 3]의 [별지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원위원회 등 타 위원회(시 외의 지방 또는 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5. 제안서공모, 설계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도 및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7.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8.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9.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디자인 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10.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11.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12.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제2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2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 ②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①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는 경우에 도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등
2. 주차장 : 차량 진·출입구, 주차구역, 주차면적, 주차시설물 등

3. 도로 및 교통시설 :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

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행로,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

②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등 및 이에 부속한 공작물의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제28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 ①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협력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제21조제1항의 디자인심의대상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
3.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4.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5.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디자인업무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실시설계가 50퍼센트 정도 이루어진 경우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지원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9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

제30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시장은 진흥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2. 공공디자인 연구·개발
3. 디자인 문화 증진사업
4. 디자인 교육 및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려
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3조(추진협의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34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및 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상,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공공디자인 전문가)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전문 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제3조 관련)

영역	중분류	세분류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
① 공공공간	다중이용	여가휴게	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관광휴양	해수욕장, 관광지 등
		체육공간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가로공간	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항만	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환경기반	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도시·마을	문화특화	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역사특화		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산업특화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건축	공공청사	행정	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보건복지	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다중이용건축	문화집회	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교육수련	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자동차	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기타공공건축	환경기반	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계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휴게편의	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시시설물	도로구조물	도로개설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도로부속	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가로시설물	교통보행	웬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
		가로녹지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편의휴게	파고라, 벤치, 쉼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공급관리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매체	정보매체	교통안내	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정보안내	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 등
	환경연출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공공매체광고물		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이이미지	상징물	조형상징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이미지	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공공용품	행정	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
		개인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공공디자인정책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7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응급/숙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쉼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 (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환경조형물
 -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 다. 벽화
 - 라. 슈퍼그래픽
 -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 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표 3】**심의(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 서식】****2.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계획(A4, 1~2매)**

- 사업 추진 목적
- 사업(용역) 개요
- 사업(용역)세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심의(자문)서

- 형 식 : A3규격 횡철
- 내 용
 - 1) 사업개요
 -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콘셉트(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 5) 향후추진 일정 등
 -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1.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제 차 공공디자인위원회(HY헤드라인 12)

안전명(HY견고딕 35)

- 사업위치(HY 견명조 20) -

심의일자(HY견고딕 20)

기관, 소관부서명(HY견고딕 20)

○ 내 용: 1) ~ 6)

1. 사업개요(HY견고딕 30)

(자료내용 : 상기 심의도서 내용 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1 - (쪽번호, 휴먼명조 12)

4. 제안 설명용 USB &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자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전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별지 서식】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 업 명	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	기 관 명		주관부서명	
계 획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가 로 세 로 높 이	
	규 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용 도			
	구 조			
	신청내역	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	사무소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디자인 자문 요청내용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66호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을 “제2조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를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급부”를 “급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출자한다”를 “출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를 “제2항의 출자금으로 인하여”로,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납입”을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으로, “본자금”을 “자본금”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비용”을 “비율”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붙여야”를 “첨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1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조사 심의하기”를 “조사·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생략)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u>소장</u> 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장----- -----.
제5조 (조직) ① (생략)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 (인사) ① (생략)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략) ② <u>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u>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2조 각 호의 ----- ----- -----.
제10조 (<u>회계연도</u>) 수도사업 특별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u>회계연도</u>) -----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 ----- ----- -----

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생략)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생략)

제12조 (출자) ①목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 3. (생략)

②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 적립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

----- 급수-----

--

3. (현행과 같음)

제12조 (출자) ①-----
----- 각 호-----

----- 출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

----- 회계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으로 인하여 -----

----- 법 제17조제2항-----

-----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
-----.

④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본자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 자본금 -----

-- 해당사업연도 -----
----- 비율 -----
-----.

제13조 (재정지원) -----

-----.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
--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

----- 설치 .
운영-----.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 회계처리상황-----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생 략)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4. (생 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첨부하여
야 --.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부터 6월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 조사 · 심의하기 -----
-----.

②제1항-----
-- 규칙으로 정한다.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린

목포시 조례 제3167호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0조 (생 략)</u> <u><신 설></u>	<u>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u> <u>제20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u> <u>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u> <u>· 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u> <u>「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u> <u>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u> <u>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u>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린

목포시 조례 제3168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삭 제>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삭 제>

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납부기한 30일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삭 제>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의신청 등) ①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
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 (강제징수) 제30조제1항
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32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2018. 1. 19.) 의결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조례 제3169호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를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감사)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u> 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2조 (감사)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u> 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목포시 고시 제2018-1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 2. 5.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4	영산로 768	2018-02-05	건물멸실
5	영산로10번길 1	2018-02-05	건물멸실
6	수문로 104-3	2018-02-05	건물멸실
7	송림로 81	2018-02-05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8-146호

공인의 등록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5.

목 포 시 장

1. 사 유 : 자동인증기 신규 설치
2. 등록일 : 2018. 2. 5.(월)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목포시장인 신흥동통합민원전용		2.4cm*2.4cm 고딕체	인증기용 (세로형)
	목포시장인 신흥동통합민원전용		2.4cm*2.4cm 고딕체	인증기용 (가로형)
	신흥동장인 통합민원전용		2.1cm*2.1cm 고딕체	인증기용 (세로형)
	신흥동장인 통합민원전용		2.1cm*2.1cm 고딕체	인증기용 (가로형)

목포시 공고 제2018-149호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5.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본조신설 2017. 12. 29.)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을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배치
- 선발은 소속직원 중 직급기준·경력기준* 등 일정요건을 구비한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 가능
 - * 6급,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
-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발굴,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범위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9. 입법예고 : 2018. 2. 5. ~ 2018. 2. 26. (21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전라남도 세정과-18029(2017. 12. 18.)호 및
1093(2018. 1. 29.)호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6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전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초과한 안전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화·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 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화·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53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5.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산정동, 연산동 공동주택 신축으로 통반 신설과 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 대상 지역 및 조정 사유

대상 지역	조정 사유
산정동	공동주택(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신축
연산동	공동주택(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신축

- 조정 현황

동 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시전체	592	2,560	598	2,585	증 6	증 25	
산 정 동	25	101	27	109	증 2	증 8	
연 산 동	13	62	17	79	증 4	증 17	

3. 규칙 개정안 : 별첨

4. 입법예고

○ 기 간 : 2018. 2. 5 ~ 2018. 2. 26(21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26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238),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산정동 12통 2반 관할구역란중 3동을 4동으로 한다.

별표 산정동 12통 3반 관할구역란중 5동을 4동으로 한다.

별표 산정동 12통 4반 관할구역란중 5동을 4동으로 한다.

별표 산정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중 26통과 27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6	1	청호로136번길 22, 201동 101호~2003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	청호로136번길 22, 201동 104호~2005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청호로136번길 22, 상가동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3	청호로136번길 22, 202동 101호~17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4	청호로136번길 22, 203동 101호~1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7	1	청호로136번길 22, 203동 1101호~2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	청호로136번길 22, 205동 101호~2002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05동 103호~1703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05동 104호~16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3	청호로136번길 22, 206동 101호~1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4	청호로136번길 22, 206동 1101호~2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별표 연산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중 13통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연 산 동	13	1	연산백련로 2, 3, 4-2, 4-4, 4-6,4-14, 14, 연산백련로7번길 3, 5-1 용해지구로 57, 59, 61 연산백련로1번길 2-2, 2-7, 2-8 연산동 1932-1~2, 1934, 1935, 1938-2, 1970, 1971-1~2, 1974-2~6, 1974-8, 1975-1~3
		2	연산백련로1번길 8-3, 8-4, 8-9, 8-13, 16-5, 16-10 연산동 1978-2, 1979, 1980-1~4, 1980-6,7,9,10, 1981-1~5, 1984
		3	연산백련로 2-8, 13, 연산백련로7번길 2-8, 2-9, 2-10, 2-11, 2-13, 2-14, 2-15, 2-16, 2-17, 2-18, 2-20, 2-21, 2-22, 2-23, 2-25, 8, 8-4, 8-6, 8-8, 연산백련로21번길 3, 7, 9, 연산동 1962-1, 1962-5~7, 1963, 1965-2~8, 1966-2~5, 1966-8, 1967, 1968-4~5, 1962-8
		4	연산백련로 23, 25, 25-1, 27, 29, 연산백련로21번길 2-9, 2-16, 2-21, 2-22, 2-24, 6, 8-1, 8-2, 8-3, 8-4, 8-5, 8-6, 8-8, 8-9, 8-11, 10-4, 연산백련로31번길 7 연산동 1954-1~5, 1954-7, 1957-1~2, 1957-4~5, 1958, 1959-1~8, 1960-1~10
		5	연산백련로 33, 35, 40, 연산백련로1번길 112-3 연산백련로31번길 2-3, 2-6, 2-12, 2-14, 2-18, 2-20, 6-4, 6-8 연산동 1923, 1941, 1944, 1945, 1947-1~4, 1947-6~7, 1950, 1951-2, 연산동 산41, 512, 514, 517~519, 524, 525, 697, 704, 705, 706, 710, 526, 527, 529, 698, 2031-1

별표 연산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중 14통, 15통, 16통, 17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명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연산동	14	1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1동 109호~510호),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상가)
		2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1동 601호~1010호)
		3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2동 101호~514호)
		4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2동 601호~1014호)
	15	1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3동 103호~514호)
		2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3동 601호~914호)
		3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4동 101호~414호)
		4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4동 501호~914호)
	16	1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1동)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상가)
		2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2동)
		3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3동)
		4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4동)
	17	1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5동)
		2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6동)
		3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7동)
		4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8동)
		5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9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생략)								
산정동	12	1	양을로41번길 40, 4동 101~606호 (중앙하이츠)		12	1	양을로41번길 40, 4동 101~606호 (중앙하이츠)	
		2	양을로41번길 40, 3동 607~906호 (중앙하이츠)			2	양을로41번길 40, 4동 607~906호 (중앙하이츠)	
		3	양을로41번길 40, 5동 907~1206호 (중앙하이츠)			3	양을로41번길 40, 4동 907~1206호 (중앙하이츠)	
		4	양을로41번길 40, 5동 1207~1510호 (중앙하이츠)			4	양을로41번길 40, 4동 1207~1510호 (중앙하이츠)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26	1	청호로136번길 22, 201동 101호~2003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	청호로136번길 22, 201동 104호~2005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청호로136번길 22, 상가동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3	청호로136번길 22, 202동 101호~17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4	청호로136번길 22, 203동 101호~1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7	1	청호로136번길 22, 203동 1101호~2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	청호로136번길 22, 205동 101호~2002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05동 103호~1703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205동 104호~16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3	청호로136번길 22, 206동 101호~1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4	청호로136번길 22, 206동 1101호~20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2차아파트)	
(생략)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생략)								
연산동	13	1	연산백련로 4-4, 4-6, 4-14, 연산백련로7번길 3, 5-1, 용해지구로 57, 59, 61, 연산동 1932-1~2, 1934, 1935, 1938-2, 1970, 1971-1~2, 1974-2~6, 1974-8, 1975-1~3		13	1	연산백련로 2, 3, 4-2, 4-4, 4-6, 4-14, 14, 연산백련로7번길 3, 5-1, 용해지구로 57, 59, 61, 연산백련로1번길 2-2, 2-7, 2-8, 연산동 1932-1~2, 1934, 1935, 1938-2, 1970, 1971-1~2, 1974-2~6, 1974-8, 1975-1~3	
		2	연산백련로1번길 8-4, 16-5, 연산동 1978-2, 1979, 1980-1~4, 1980-6~7, 1980-9~10, 1981-1~5, 1984			2	연산백련로1번길 8-3, 8-4, 8-9, 8-13, 16-5, 16-10 연산동 1978-2, 1979, 1980-1~4, 1980-6, 7, 9, 10, 1981-1~5, 1984	
		3	연산백련로 2-8 연산백련로7번길 2-9, 2-11, 2-16, 2-18, 2-20, 8, 8-6, 8-8, 연산백련로21번길 3, 7, 연산동 1962-1, 1962-5~7, 1963, 1965-2~8, 1966-2~5, 1966-8, 1967, 1968-4~5			3	연산백련로 2-8, 13, 연산백련로7번길 2-8, 2-9, 2-10, 2-11, 2-13, 2-14, 2-15, 2-16, 2-17, 2-18, 2-20, 2-21, 2-22, 2-23, 2-25, 8, 8-4, 8-6, 8-8, 연산백련로21번길 3, 7, 9, 연산동 1962-1, 1962-5~7, 1963, 1965-2~8, 1966-2~5, 1966-8, 1967, 1968-4~5, 1962-8	
		4	연산백련로 23, 연산백련로21번길 2-24 연산동 1954-1~5, 1954-7, 1957-1~2, 1957-4~5, 1958, 1959-1~8, 1960-1~10			4	연산백련로 23, 25, 25-1, 27, 29, 연산백련로21번길 2-9, 2-16, 2-21, 2-22, 2-24, 6, 8-1, 8-2, 8-3, 8-4, 8-5, 8-6, 8-8, 8-9, 8-11, 10-4, 연산백련로31번길 7 연산동 1954-1~5, 1954-7, 1957-1~2, 1957-4~5, 1958, 1959-1~8, 1960-1~10	
		5	연산백련로 33, 연산백련로31번길 2-3, 2-12, 연산동 1923, 1941, 1944, 1945, 1947-1~4, 1947-6~7, 1950, 1951-2, 연산동 산41, 512, 514, 517~519, 524, 525, 697, 704, 705, 706, 710, 526, 527, 529, 698			5	연산백련로 33, 35, 40, 연산백련로1번길 112-3 연산백련로31번길 2-3, 2-6, 2-12, 2-14, 2-18, 2-20, 6-4, 6-8, 연산동 1923, 1941, 1944, 1945, 1947-1~4, 1947-6~7, 1950, 1951-2, 연산동 산41, 512, 514, 517~519, 524, 525, 697, 704, 705, 706, 710, 526, 527, 529, 698, 2031-1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통 명	반 명	관 할 구 역
연산동	신 설	신 설	신 설	14	1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1동 109호~510호),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상가)
					2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1동 601호~1010호)
					3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2동 101호~514호)
					4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2동 601호~1014호)
				15	1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3동 103호~514호)
					2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3동 601호~914호)
					3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4동 101호~414호)
					4	연산백련로1번길 51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604동 501호~914호)
				16	1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1동)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상가)
					2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2동)
					3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3동)
					4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4동)
				17	1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5동)
					2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6동)
					3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7동)
					4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8동)
					5	연산백련로1번길 79 (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109동)
(생략)						

목포시 공고 제2018-160호

옥암 저류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5.

목 포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범죄 및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옥암 저류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4. 시 행 청 : 전라남도 목포시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2. 5 ~ 2018. 2. 24 (20일간)

6. 설치장소 : 별첨자료 참고

7.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8. 공고방법 :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목포시 하수과 (061-270-8095)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하수과 (우편번호 58613)

○ 팩스 : 061-270-865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별 첨 】

☐ 방법용 CCTV 설치(예정) 지역

설치장소	소 재 지
옥암 저류조 내부	목포시 옥암동 옥암 저류조

시 정 알 림 판

설 연휴 기간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안내

- 연휴기간 : 2018. 2. 15.(목)~2. 18.(일)
- 정상수거일 : 2018. 2. 15.(목), 2. 17.(토)
- 수거휴무일 : 2018. 2. 16.(금), 2. 18.(일)
- ※ 수거 휴무기간 중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내 보관 후 2. 16.(금), 2. 18.(일) 야간에 배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신고시간 : 2018. 2. 1.(목)~ 2. 23.(금)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등)
- 신고방법
 - 환경보호과 ☎ 270-3318(야간 270-3222) 또는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
 - 우리시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128환경신문고 콘텐츠에 등록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2018년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상담일시 :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15:00~17:00
- 상담대상 : 목포시민, 관내 기업체 대표, 직원 등
- 상담내용
 -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상담실 운영일정(2~3월)



연번	상담일자	상담관(변호사)	상담 장소
1	2. 5.	정중채	용당2동행정복지센터
2	2. 19.	이옥형	연동행정복지센터
3	3. 5.	나양명	산정동행정복지센터
4	3. 19.	문준석	연산동주민센터

※ 상기 상담일정(상담관 및 상담장소 등)은 형편상 변경될 수 있음

기획예산과 ☎ 061-270-3226

시 정 알 림 판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신청

- 사업목적 :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신청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고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1949.1.1.~1998.12.31.)
 - ※ 배우자가 직장 등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미용실, 영화관, 서점, 음식점 등 36개 업종에서 이용
- 신청방법 : 2월 23일까지 농업산업과 농업지원센터로 접수



농업산업과 농업지원센터 ☎ 061-270-4908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사업목적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발급기간 : 2018. 2. 1.(목)~2018. 11. 30.(금)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대상 : 6세(201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이용분야 : 공연·영화·전시 관람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1인당 연간 7만원)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예술과 ☎ 061-270-3228

2018년 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접수기간 : 2018. 2.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① '05. 12. 31.이전 제작된 총중량 2톤 이상 자동차
- ② 신청일 기준 목포시내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
- ③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동차
- ④ 접수기간 중 발행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⑤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⑥ 체납내역(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이 없는 자동차



- 지원금액 : 연식·차종별 지원금액 및 상한액 차등 지원(대당 평균 1,650천원)
 - ※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 신청방법 : 폐차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제출 ⇨ 지원 대상여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보조금 신청
 - ※ 제출서류 : 목포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항목 클릭 후 검색어에 '조기폐차' 작성

환경보호과 ☎ 061-270-8674